

위임전결규정

제정 1998.
 개정 2006. 1. 1.
 개정 2006. 6. 19.
 개정 2008. 3. 19.
 개정 2012. 7. 1.
 개정 2016. 03.14.
 개정 2017. 3. 30.

- 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의 목적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제반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에 있다.
- 제2조(결재권의 위임)** 총장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이를 행정부서장, 스쿨원장 또는 부속기관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.
- 제3조(책임)** 위임받은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제4조(중요사항)**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사전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5조(경미한 사항)**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그 경중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.
- 제6조(보고)**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협조)**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협조를 받은 후 처리한다.
- 제8조(결재권자의 부재)** 전결권자의 결원, 출장, 기타 유고시에는 전결권자가 속해 있는 부서의 차하 위직에 있는 자가 대결한다. 다만,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- 제9조(전결사항)**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06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2006년 3월 1일 이후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)
- ④ 이 규정은 2008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2012년 3월 1일 이후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)
- ⑥ 이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

⑦ 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(단, 개정일 이후 결재상황에서 위임전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반영한다).

(별표)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